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1월 15일

나. 발 의 자: 이용주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변경사항 및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 (안 제22조 및 제26조)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 개정 (안 제25조)
- 도서관의 명칭 변경 (안 별표1)
- 신규 회원증 발급 수수료 삭제 (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 변경사항 및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도서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 “도서관자료”를 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22조제2항과 제26조에서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였음.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르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을 규정하고, 도서관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4호가목 개정규정에 따른 작

은도서관으로 본다고 하여 상위법에 따른 개정임.

- 안 제25조제2항의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기준을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따르도록 정비하였음.
- 안 별표1에서 도서관 명칭을 “정보문화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였음.
- 안 별표2에서는 현행 신규·재발급시 각각 1매당 1,0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던 것에서 신규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삭제하였음. 도서관 회원증은 모바일 회원증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며 현재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노년층이나 초등학생 이하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어 신규회원증 발급 수수료 삭제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임.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 부분의 삭제, 변경 사항 반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신규회원증 발급수수료를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5
----------	-----

발의년월일: 2021년 11월 일

발의자: 이용주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변경사항 및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서관법」에 따라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
(안 제22조 및 제26조)
- 나.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 개정(안 제25조)
- 다. 도서관의 명칭 변경(안 별표1)
- 라. 신규 회원증 발급 수수료 삭제 (안 별표2)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2021.11.12. ~ 11.16.)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교육·문화교실 등의 강좌를 수강하려고**”를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8.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제2항 중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중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고”를 “박물관·미술관·문화원·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주 소	비 고
대림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08-2)	
문래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76-5,8)	
선유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1)	
여의샛강마을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별표 2 제2호 회원증 발급의 비고란 “신규·재발급”을 “재발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하여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p> <p>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p> <p>3. ~ 5. (생략)</p> <p>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교육·문화교실 등의 강좌를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p> <p>7.(생략)</p> <p><신 설></p>	<p>제3조(정의) ----- -----</p> <p>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p> <p>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p> <p>3. ~ 5. (현행과 같음)</p> <p>6. -----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 ----- ----- -----.</p> <p>7.(현행과 같음)</p> <p>8.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p>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 ④ (생략)

<신 설>

제22조(기증자료) ① (생략)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생략)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고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기증자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작은도서관 -----
-----.

제2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문화시설과의 협력) -----

박물관·미술관·문화원·작은도서관-----
-----.

현 행

[별표 1]

도서관의 명칭·주소(제2조 관련)

명 칭	주 소	비 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08-2)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76-5,8)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1)	
여의디지털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별표 2]

도서관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제17조 관련)

2. 수 수 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전자복사 및 프린터 인쇄	B5	30원	1면당 금액적용
	A4		
	B4	50원	
	A3		
회원증 발급	1매당	1,000원	신규 · 재발급

개 정 안

[별표 1]

도서관의 명칭·주소(제2조 관련)

명 칭	주 소	비 고
대림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08-2)	
문래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76-5,8)	
선유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1)	
여의샛강마을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별표 2]

도서관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제17조 관련)

2. 수 수 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전자복사 및 프린터 인쇄	B5	30원	1면당 금액적용
	A4		
	B4	50원	
	A3		
회원증 발급	1매당	1,000원	재발급